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의 안 번 호	100
------------	-----

2022년 12월 19일
교 통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제 안 자 : 김경 의원 외 14명

나. 제안일자 : 2022년 8월 26일

다. 회부일자 : 2022년 9월 2일

라. 상정일자

- 제315회 정례회 제3차 교통위원회(2022년 12월 19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김경 의원)

가. 제안이유

- 시장으로 하여금 교통안전사고에 취약하여 사고의 위험이 크다고 인정되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 대해서는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를 적극적으로 설치할 수 있게 노력하도록 규정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를 적극적으로 설치할 수 있게 시장이 노력하도록 규정함(안 제7조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로교통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

다. 입법예고

- 기 간 : 2022. 9. 7. ~ 2022. 9. 11.
- 제출의견 : 없음

라.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¹⁾

1) 보행자전거과-903호(2022.9.7.)

○ 제출의견 : 원안 가결

- 제2항 신설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 노력을 강조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 대해서는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를 보다 적극 설치하게 됨으로써
- 어린이 교통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통학로 안전확보를 보다 강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4.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장훈)

가. 개요

- 동 개정조례안은 어린이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장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 대해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나. 검토의견

-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는 보행자가 횡단보도 대기공간에서 무단횡단을 방지하고 녹색횡단 신호시 음성으로 횡단을 안내함²⁾으로써 보행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물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³⁾에서는 “특별·광역시장은 보행 등을 설치하는 경우 안전한 보행을 위해 ‘음성으로 알려주는 보조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 및 재정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현행 조례 제7조의³⁴⁾이 '19년 1월 3일 개정⁵⁾되었고, 조례 개

2) 보행신호에 따른 음향신호 표출내용(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표준지침, 경찰청, '17.3.)

보행신호	상 황	음향신호
① 적색	무단횡단 감지 시	「위험하오니 인도로 이동해 주십시오」
② 녹색	횡단 감지 시	「좌우를 살 핀 후 건너가십시오」
③ 녹색 점멸	횡단 감지시	「다음 신호에 건너세요」

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3 비교

바. 보행등을 설치하는 경우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보조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2). 보행자에게 보행신호 등을 음성으로 알려주는 보조장치

4)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제7조의3(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 및 재정지원)

정 당시 전체 어린이보호구역 1,730개소 중 32개⁶⁾ 횡단보도에
만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가 설치되어 있었음

- 현재는 전체 어린이보호구역 1,711개소 중 667개⁷⁾의 횡단보도에 설치되었으나 아직도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어린이보호구역내 횡단보도가 다수인 상황임
- 또한, 최근 5년간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내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⁸⁾을 살펴보면 2021년 사고건수는 68건으로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나 횡단중 사고 비율은 38.2%로 여전히 높은 수준임에 따라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 등 어린이보호구역내 어린이 횡단 중 사고 감소를 위해 지속적인 시설투자가 필요한 상황임

① 시장은 교통안전사고에 취약한 어린이 보호구역 및 교육시설이 있는 장소 또는 어린이 무단횡단이 예상되는 곳에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음성안내 보조장치를 설치할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5) 서울특별시조례 제6976호, 2019. 1. 3., 일부개정·시행

6)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의안번호 143호, '18.9.19. 발의) : 어린이보호구역내 32개 지점에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

7) 서울시 보행자전거과는 1,711개소 어린이보호구역중 667개 지점 횡단보도에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가 설치된 것으로 파악('22년 9월)

8) 최근 5년간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내 어린이(12세 이하) 교통사고 현황

연도	보호 구역 (개소)	사고 건수 (건)	사망자 수 (명)	부상자 수 (명)	사고유형(건수)				
					횡단중	차도 통행중	길가장 자리 구역	보도 통행중	기타
2017	1,733	81	1	85	45	3	1	1	31
2018	1,730	77	1	77	43	7	2	4	21
2019	1,721	114	2	115	53	8	2	2	49
2020	1,694	65	-	70	19	1	2	1	42
2021	1,735	68	1	83	26	5	-	2	35

※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http://taas.koroad.or.kr/>)

- 동 개정조례안은 사고의 위험이 크다고 인정되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시장의 노력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으로 어린이 교통사고 특성 등을 고려할 때 동 조례 개정을 통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일부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고의 위험이 크다고 인정되는 어린이보호구역내 횡단보도”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에서 서울시는 합리적인 우선순위 선정 기준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시설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임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통안전사고에 취약하여 사고의 위험이 크다고 인정되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의3(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 장치 설치 및 재정지원) ① (생략)</p> <p><u><신 설></u></p> <p>② (생략)</p>	<p>제7조의3(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 장치 설치 및 재정지원) ① (현행과 같음)</p> <p><u>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통안전사고에 취약하여 사고의 위험이 크다고 인정되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u></p> <p>③ (현행 제2항과 같음)</p>